김포 도시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장사시설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

의 안 번 호 제3274호

제출년월일 2023. 7. . 제 출 자 김포시장

1. 제안사유

가.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83-4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[보건위생 시설:장사시설] 내 중복된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27호선) 부지와 군부대 점·사용 토지를 제척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이용·관리 도모

2. 근거법령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(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

3. 일반현황

가. 위 치 :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83-4번지 일원

나. 규 모 : 29,486㎡ (기정 : 31,707㎡, 감 : 2,221㎡)

[도로(소로1-27호선) 중복 : 915㎡, 해병대 제2사단 점·사용 : 1,306㎡]

다. 시 행 : 김포시장(노인장애인과장)

4. 추진실적

가. 2022. 8. 31. : 김포 도시계획시설(장사시설) 결정(변경) 입안요청서 제출

(노인장애인과→도시계획과)

나. 2022. 10. 19. : 관계부서(기관)협의(~'23. 6. 7.)

다. 2022. 10. 21. : 주민의견 청취(김포시 공고 제2022-2298호)

[공고기간: '22. 10. 21. ~ '22. 11. 4.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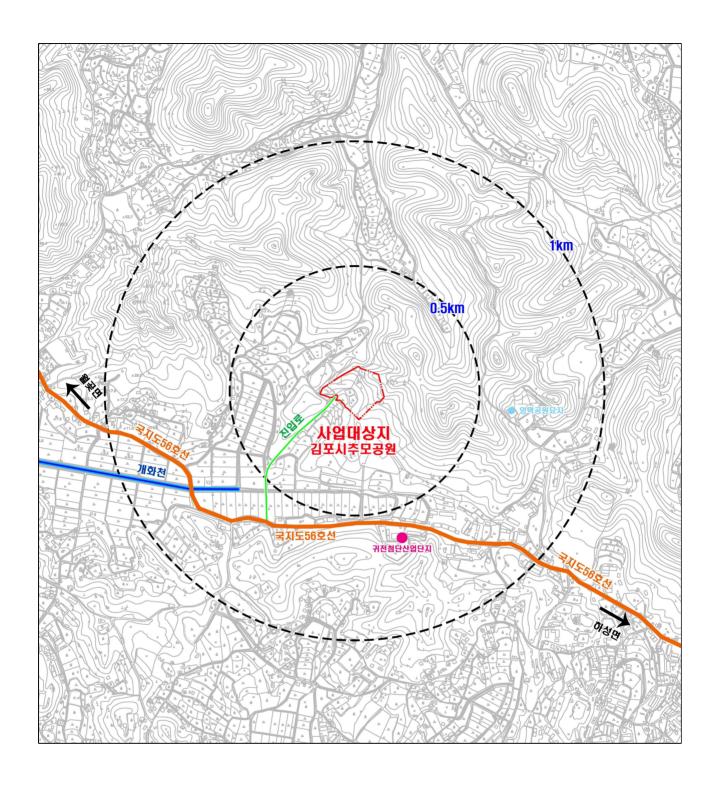
[결 과 : 의견없음]

5. 향후 추진계획

가. 2023. 8. :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나. 2023. 9. : 김포 도시계획시설(장사시설)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

6. 위치도



7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

가.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구분		면적(m²)	구성비(%)	비고
관리지역	합 계	29,486	100.0	
	계획관리지역	29,486	100.0	

나.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

1) 장사시설 변경 결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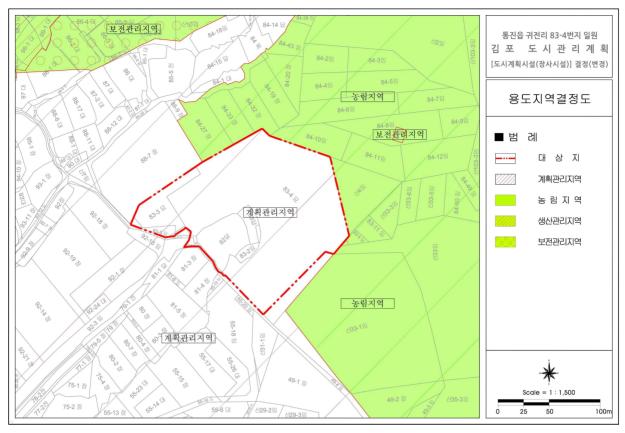
구분	도면 표시 /	시설명	위치	면적(m²)			최초	刊
丁正	표기 번호	기설명	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고
변경	1	장사시설 (김포시 추모공원)	통진읍 귀전리 83-4번지 일원	31,707	감)2,221	29,486	김포시 고시 제2009-7호 (2009.01.14.)	-

2) 장사시설 변경 결정 사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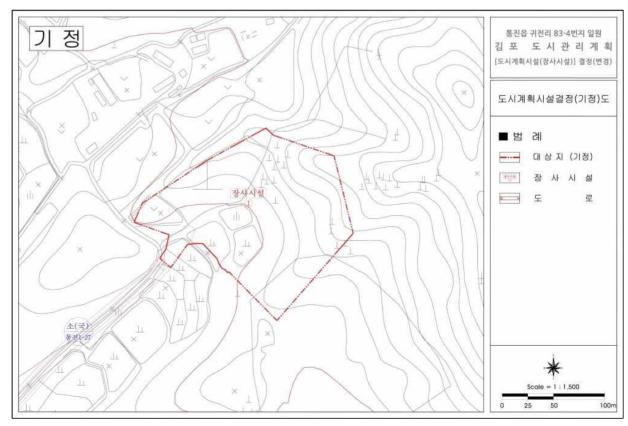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장사시설	• 면적변경 - 기정 : 31,707㎡ - 변경 : 29,486㎡ (2,221㎡ 감소)	· 통진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1-27호선)과 중첩되는 일부 토지 및 군부대 점·사용 토지를 장사시설에서 제척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 이용·관리 도모

8. 도시관리계획 결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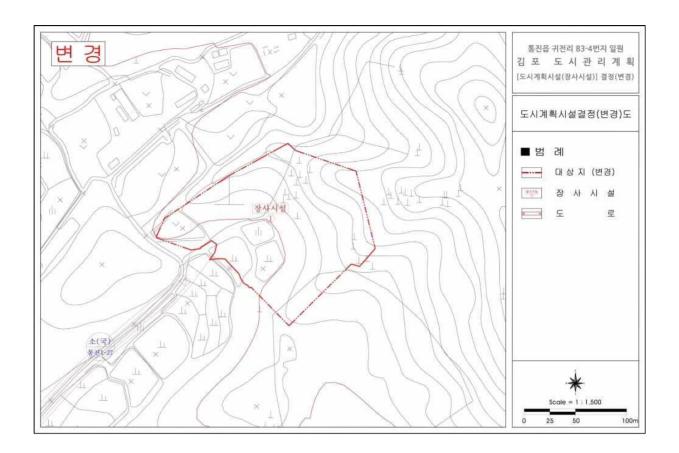
가. 용도지역 결정도(변경없음)



나. 도시계획시설(장사시설) 결정도(기정)



다. 도시계획시설(장사시설) 결정도(변경)



9. 위성사진



10. 의회의견 청취 관계법령 발췌

- 가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 - ⑤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<u>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 하려면 대</u>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나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
 - ① 법 제28조제5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- 1.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, 제38조의2, 제39조,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·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. 다만,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 - 2.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
 -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·군관리 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. 다만,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·군계획 시설결정(도시·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·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너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- 다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(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)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<u>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</u>이란 제2조제1호 및 <u>제2호의 시설</u>을 말한다.
- 라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(공공시설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4조제2호에서 "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- 2. <u>장사시설</u> 중 화장장·공동묘지·<u>봉안시설(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·공동묘지·봉안</u> 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
, ,	ر (ما ا	- 기계취기	
소·	관실·과·소	도시계획과 -	
	실·과·소장	도시계획과장	
입	성 명	양 수 진	
아	팀 장	도시계획팀장	
빈	직위·성명	장 경 철	
자	담 당 자	지방시설주사보	
	성명·전화	권성준(☎2440)	